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 월 9 일

여 수 시 장

2023/05/09



여수시 조례 제1893호

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고, 제47조를 제48조로 하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47조의2를 제48조의2로 한다. 제5장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u></p> <p><u>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u></p> <p><u>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u></p>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 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 ~ 제48조 (생 략)

제49조 (생 략)

제50조 · 제51조 (생 략)

제42조 ~ 제49조 (현행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와 같음)

제50조 (현행과 같음)

제51조 · 제52조 (현행 제50조 및 제51조와 같음)